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7. ~ 12. 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2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83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2. 7.

1. 제정이유

- 정원박람회 인근 풍덕들에 야영장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 적극 유치 및 일상 속 캠핑문화 확산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기여코자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시설 사용료의 납부)

-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함
- [별표 1]

시설별	사용기준	주말 공휴일	평일	비고(단위:원)
오토캠핑장 (A 유형)	1면	35,000	30,000	A : 데크 유
오토캠핑장 (B 유형)	1면	30,000	25,000	B : 데크 무
글램핑장	1개소	120,000	80,000	기준정원 : 4인

○ 제7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 사용료는 사용권 또는 온라인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
-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시금고에 해당 월말까지 징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제8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
- 단체 및 장기 사용자 : 20% 감면

○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 야영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운영 규정은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1. 15. ~ 12.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1. 9.(가족보육과-2668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1. 8.(기획예산실-1625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1. 15.(순천시 공고 제2022-2507호)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로 관리 및 운영되는 야영장은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으로 정한다.

제3조(위치)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의 위치는 순천시 풍덕동 330-3 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데크, 관리동, 화장실·샤워장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구분
 - 가. 평일 :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에서 일요일, 공휴일 전날 및 공휴일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장기 사용자”란 연내 14일 이상 연속하여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을 하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예약) ①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일까지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 사용료의 납부)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 금액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별표 2]에 따라 사용권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해당 월말까지 순천시(이하 “시” 라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 금고에 징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10 감면

- 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3. 100분의 20 감면

- 가. 단체 사용자
- 나. 장기 사용자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③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고,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을 1개 시설에 한한다. 다만, 단체 사용자의 경우 감면대상의 개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야영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 4]의 야영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야영장 주변 환경보호, 관리 및 숙박편의 제공
4. 야영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에 야영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7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8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9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명피해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야영장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감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감자는 시장으로부터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야영장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야영장 시설 사용료 (제6조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주 말, 공휴일	평 일	비 고
오토캠핑장 (A 유형)	1면	35,000	30,000	A : 데크 유
오토캠핑장 (B 유형)	1면	30,000	25,000	B : 데크 무
글램핑장	1개소	120,000	80,000	기준정원 : 4인

(※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소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2.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가.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5,000원
 - 나.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0,000원
 - 다.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3. 위 시설 중 글램핑장의 경우,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중학생 이상)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별표 2]

야영장 시설 사용권(제7조 관련)

No. 200 - 000001	No. 200 - 000001
야영장 시설 사용권(원부)	야영장 시설 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순 천 시 장 (인)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제10조 관련)

구 분	반환기준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선납금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 및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
사전 예약된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 ※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4]

야영장 사용자 수칙(제13조 관련)

이 곳 야영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한 분 한 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실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야영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 야영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이며, 야영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사용료

-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설 외에는 그늘막 및 텐트 사용을 금합니다.

4. 차량이용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캠프장에 앰프(노래방 기기)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야영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야영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야영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전기시설

-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1000w 이상) 사용을 자제하여 주세요.
-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야영장 전체의 전기가 다운 될 염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관리비, 인건비, 수선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589,000	-1,000,000	411,000	0	0	0	0
세입(a)	561,000	0	561,000	0	0	0	0
세출(b)	1,150,000	1,000,000	150,00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6차년도 (2027년)
합 계	1,150,000	1,000,000	150,000	0	0	0	0
시 비	1,150,000	1,000,000	150,000	0	0	0	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1개 단위사업(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운영 및 관리)
-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3년 10월

○ 산 출 액 : 1,150,000천원(2022년 1,000,000천원, 2023년 150,000천원)

■ 산출근거(2022년)

- 시설 조성비 : 1,000,000천원×1식 = 1,000,000천원

■ 산출근거(2023년)

- (세입) 시설 사용료 징수 : 18,700천원×30주 = 561,000천원

- 운영 인건비 : 2,500천원×7개월×6명 = 105,000천원

- 복리후생비 및 보험비 등 기타 경비: 45,000천원×1식 = 45,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문화관광국	관광과	과장	이찬성(☎ 749-5500)
	관광과	관광개발팀	팀장 정상훈(☎ 749-5801)

참고 1

관련 법령 등 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8. 12. 26.]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03.09>
-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2.31>
-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3.12.31>

- ④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31>
-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3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6.03.09>
[제목개정 2009.12.31.]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20조

-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참고 2

관내 시설 및 타 지자체 야영장 조례

1. 순천시 관내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016. 9. 22.	관광과
2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4. 12. 31.	산림과

2. 타 지자체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018. 12. 27.	관광과
2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020. 12. 31.	관광과
3	구례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2013. 4. 22.	문화관광과
4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020. 3. 10.	문화예술과